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제 78 호  
2017년4월21일(금)

여 수 시 보

시 정 방 침

- 1. 함께하는 소통시정
- 1. 활력있는 지역경제
- 1. 수준높은 교육복지
- 1. 앞서가는 해양관광
- 1. 걱정없는 안전사회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목 차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17-103호 여수시 도로명 및 도로구간 폐지 고시 /3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17-853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나진-소라간 국가지원지방도(22호선) 확포장공사) /6
- 여수시 공고 제2017-854호 여수시 재정 투자사업 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9

회 관								
--------	--	--	--	--	--	--	--	--

여수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여수시 고시 제 2017 - 103호

## 여수시 도로명 및 도로구간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여수시 도로명 및 도로구간 폐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4. 21.

여 수 시 장

1. 고 시 일 : 2017. 4. 21.
  2. 고시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시 및 해당 읍·면·동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명 및 도로구간 폐지에 관한 사항(응서아랫길 외 1)  
※ 붙임 조서 및 현황도 참조
  4. 참고사항
    - 폐지된 도로명은 최소한 5년 동안은 도로명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음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팀(☎ 061-659-335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 및 도로구간 폐지 조서

연번	도로명	위계	길이 (m)	폭 (m)	시 점	종 점	기초 간격 (m)	기초번호		중심선	관할 행정구 역	폐지사유
								시작번 호	끝 번호			
1	웅서 아랫길	길	491	4	여수시 웅천동 508-4	여수시 웅천동 760-1	20	1	48	현황도 참조	웅천동	웅천택지개발사업 으로 도로명 및 도로구간 폐지
2	웅천로 (1차종속 도로)	로	322	15	여수시 웅천동 595-5	여수시 웅천동 1097-5	20	55-1	55- 32	현황도 참조	웅천동	웅천택지개발사업 으로 도로명 및 도로구간 폐지
				이	하			여		백		

□ 도로명 및 도로구간 폐지 현황도 (웅서아랫길)



범례 :  폐지 도로구간

□ 1차종속구간 폐지 현황도 (웅천로)



범례 :  폐지 도로구간

## 보상계획 열람 공고

전라남도에서 사업시행하고 우리시에서 보상대행하는 『나진-소라 국가지원지방도<22호선> 확포장공사』 부체도로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실시하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4. 21.

### 여 수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나진-소라 국가지원지방도<22호선> 확포장공사
- 사업시행청 : 전라남도 [여수시-용지보상]
- 사 업 량 : L=21.8km, B=30m

2. 열람공고기간 : 2017. 4. 21. ~ 5. 8.(17일간)

3. 보상대상 : 상기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 붙임 참조

4.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조서는 여수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우리 시도도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여수시 홈페이지 주소 : [www.yeosu.go.kr](http://www.yeosu.go.kr)게재

5. 보상시기 : 추후 감정평가 후 개별 통지

6.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7.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도로과(☎061-659-4065)로 문의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 지 의 내 역

사업명 : 나진-소라간국가지원지방도확포장공사부체 도로구간

구분 지번	소재지	당초(분할전)		편입(분할후)		지 목	소 유 자			관계인		비 고
		지 번	면 적 (m <sup>2</sup> )	지 번	면 적 (m <sup>2</sup>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 리의 종 류 및 내 용	
	합계	5필 지	4,636		899. 0							
1	화양면 창무리	233 -3	82	233- 3	82	전	곽* 순	여수시 화양면 화양로 14*6				
2	화양면 용주리	155 6-3	431	1556 -11	74	답	박* 근	여수시 화양면 꽃다리길 5*-16				
3	화양면 용주리	155 7	1,86 7	1557 -2	385	답	이* 근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종로 20,4*7동160*호( 계산동,은행마을 태평@)				
4	화양면 용주리	155 6-2	1,00 0	1556 -10	166	답	박* 주	여수시 화양면 꽃다리길 5*-16	화* 농 업 동 조 합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4*6	근저당 권	
5	화양면 용주리	155 6-1	1,25 6	1556 -9	192	답	이* 근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종로 20,41*동160*호( 계산동,은행마을 태평@)				



# 공 고

여수시 재정 투자사업 심사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1일

## 여 수 시 장

### 여수시 재정 투자사업 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을 적용받는 사항에 대하여 규칙에 중복 기재된 조문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여수시 재정 투자사업 심사 규칙」을 전부개정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제2조)

-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  
⇒ 「지방재정법」 제37조, 제37조의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44조  
⇒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 나. 상위법령 중복 기재사항 삭제

- 투자심사기준(현행 제2조)
-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현행 제3조)
- 투자심사의 구분 등(현행 제4조)
- 투자심사의 절차 등(현행 제5조)
- 재심사(현행 제7조)
- 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현행 제8조)
- 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현행 제9조2)
- 타당성 조사 절차(현행 제10조)
- 타당성 재조사(현행 제11조)
- 세부기준 등(현행 제12조)
- 재정지원의 요청 등(현행 제13조)

## 3. 개정 규칙안 : 붙임

## 4. 예고기간 : 2017. 4. 21. ~ 5. 11.(20일간)

## 5.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5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기획예산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메일(gikwang0906@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할 곳

- 가. 주 소 : 우)59675 전남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나. 받는 사람 : 여수시장(참고 : 기획예산과)
  - 다. 전화번호 : 061)659-3419, 팩스 061)659-5872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기획예산과(담당자 백기광)로 문의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여수시 재정 투자사업 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항목별 내용	찬성 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 여수시 재정 투자사업 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여수시 재정 투자사업 심사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제37조의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여수시의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자문 등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여수시 지방재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3조(투자심사결과 통보 등) ① 투자심사부서의 장은 투자심사결과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예산 및 투자심사의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투자심사의뢰부서의 장은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및 사업추진 상황 등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투자심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는 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④ 투자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투자심사의뢰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투자사업의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종전의 투자심사 결과 제3항제3호에 따른 재검토 통보를 받고 그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한 경우
3. 투자심사의뢰서에 통계자료의 왜곡 또는 주요 자료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로 자료

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경제성·재무성 분석 결과 등 타당성 조사 내용에 명백히 오류가 있는 경우
5. 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투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지방재정관련 계획등에의 반영)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투자심사 관련 사항이 제2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